

# 2024년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택배사무 위·수탁 협약서

2024년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택배사무에 대한 위탁과 관련하여 김해시장(이하 “위탁자” 라 한다)과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(이하 “수탁자” 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제1조 (위탁의 내용) ① 본 협약상 「2024년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택배사무」 위탁의 내용은 경로당 지원용 정부양곡 택배 배송, 택배 비용청구, 사후관리 등 일련의 업무 전 과정을 말한다.

②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

- ▶ 택배물품 : 정부양곡(나라米) (1포대 당 20kg)
- ▶ 택배물량 : 3,710포대 (위탁자의 신청 등에 따라 수량 증감 가능)
- ▶ 배송기간 : 양곡 인수 이후 매월 말일까지 배달함 원칙
- ▶ 사무내용 : “수탁자” 는 김해시의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양곡을 인수하여 배송기간 내에 정부양곡을 신청한 경로당에 직접 배달한다.

제2조 (위탁기간) “위탁자” 와 “수탁자” 는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24. 1. 1. ~ 12. 31.(12개월)로 하고, 기간만료 전에는 “수탁자” 의 운영평가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, 변경 및 축소할 수 있다.

제3조 (위탁사무 이행절차) 위탁사무의 이행절차는 다음과 같다.

- ① 경로당 정부양곡 수요량 파악 및 신청자 명단 제출
  - ▶ 읍·면·동 → 김해시 노인복지과
- ② 신청 경로당 명단 통보 및 택배배달 의뢰
  - ▶ 김해시 노인복지과 → “수탁자” , 전월 25일까지
- ③ 택배배달
  - ▶ “수탁자” 가 김해시 양곡보관 창고에서 양곡을 수령하여 양곡을 신청 경로당에 직접 배달 (매월 말일까지)
- ④ 택배비용 청구

- ▶ 당월 배달완료 후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령일자, 수령자, 수령자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배송확인서(별첨)를 제출하여 택배비용을 청구

#### 제4조 (택배비용의 지급 및 정산)

- ① 배달조건외 난이도에 관계없이 매월 ‘실제 배달 건수×협약 단가’에 의한다.
  - ▶ 2024년 택배사무 협약 단가 : 5,700원(경로당 단가 산출내역 붙임 참조)
- ② 노인복지과에서는 “수탁자”가 경로당별 양곡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한 택배비용에 대하여 제출서류 및 실적을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한다.
- ③ “수탁자”는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“위탁자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“수탁자”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“위탁자”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.

제5조 (장부 등의 비치) 수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 등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 (택배 서비스 향상 등 사후관리) ① “수탁자”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달기한 내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“위탁자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지시받은 조치사항에 즉시 응해야 한다.

- ② “수탁자”는 보관창고에서 물품을 인수한 이후부터 신청자에게 인도시까지 파손 없이 양곡을 배송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③ 수취인 불명, 수취 거부, 주소지 변경, 이사 등의 이유로 반송되는 경우 양곡을 수령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반송하며, 별도의 반송비는 청구하지 아니한다.
- ④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“수탁자”의 계약위반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“수탁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
- ⑤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사항을

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으며,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“위탁자”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7조 (해약) ① “위탁자”는 “수탁자”가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“수탁자”는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.  
② 수탁자가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 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,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“위탁자”의 결정에 따른다.

제9조 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.



2023년 12월 일

위탁자 김해시장

홍태용



수탁자 재)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 
수행기관(김해시니어클럽)

최정규

